

# 첨단과학기술연구원 운영규정

□ 제정 : 1997. 10. 01.

□ 개정 : 1998. 05. 21.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 및 소재지) ① 이 연구원은 「첨단과학기술연구원」(이하 “본 원“이라 함) (Kowoon Institute of Technology Innovation : KITI)이라 한다.

② 본 원은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 교“라 함) 내에 둔다

제2조(설치목적) 본 원은 자연과학 및 첨단공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, 나아가 본 원은 창업 및 신기술 보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산·학·연·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독립된 제조업체로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각종 행정, 재정 및 경영지원을 함으로써 건실한 제조업체로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① 본 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첨단과학기술의 기초 및 응용 연구
2. 외부기관에서 위탁한 연구, 개발 및 조사
3. 간행물의 발간, 연구 발표회,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
4. 기타 본 원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② 본 원은 입주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시설 지원
  - 가. 시제품제작 공간 및 기계시설
  - 나. 시험분석 및 측정장비(공업기술원과 협의지원)
  - 다. 회의실, 전시실, 공동작업장 등 제공
  - 라. 기본 Utility 제공(전기, 수도 등)
2. 공동연구, 지도 및 연수
  - 가. 경영 및 기술연구 지도
  - 나. 시제품 제작 공동연구(연구비 지원)
  - 다. 대학연구소 네트워크 알선
  - 라. 창업자금 및 입지 알선
  - 마. 연구 및 개발
3. 경영자문, 법률자문, 특허관련 업무지원
4. 대학내 시설의 공동사용 및 학생의 현장지원
5. 사무관리 지원
  - 가. 전화, FAX, 안내

나. 워드프로세서, 복사기, 우편

다. 기타 사무 및 행정지원

제4조(시행내규) 본 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비 관리, 분석기기 관리, 입주업체 선정 및 임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내규로 따로 정한다.

## 제2장 조직 및 임원

제5조(조직 및 임원) ① 본 원은 원장 1인과 약간 명의 부서장을 둔다.

② 원장은 수원대학교 교수 또는 부교수인 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본 원은 산하에 연구지원부, 연구기기부, 정보화부, 대외협력부, 경영지원부, 운영관리부, 기술지원부의 7개 지원부서를 둔다. 다만 원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를 가감할 수 있다.

④ 전항 각 부서의 부서장은 수원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6조(임원의 직무) ① 원장은 본 원을 대표하고 원내의 연구, 인사, 재정, 관리, 기타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서장은 원장과 협력하여 별도의 업무 분담표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.

제7조(직원) ① 본 원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원에 연구전임교수, 겸임교수, 전임연구원, 연구조원, 기술조원 및 행정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전임교수는 본 원에서 연구에만 종사할 자로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 교의 교원임용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겸임교수는 본 교 전임교원으로 한다

④ 전임연구원은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박사 후 연구원, 박사과정 연구원 및 석사 후 또는 상응한 경력을 갖춘 연구원으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⑤ 연구조원은 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로서 연구전임교수 또는 겸임교수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.

⑥ 기술조원 및 행정조원은 필요에 따라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, 운영위원은 교내외 인사중 10인 전후의 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하고, 위원장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.

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약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인 이상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결정한다.

1. 본 원 사업의 추진 및 지원방안
2. 본 원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방안

3. 입주업체 모집 방안 및 입주자 선정
4. 입주업체 지원방안
5. 기타 사업 추진상 필요한 사항

## 제4장 재 정

제9조(재원) 본 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경기도 지원금, 통상산업부 지원금, 중소기업청 지원금, 과학기술처 지원금, 연구사업 수입금, 대학 지원금, 입주업체 입주 관리비, 외부기관으로 부터의 찬조 및 기여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(회계년도) 본 원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11조(예산 및 결산) ① 본 원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한다.

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매 회계연도 종료후 1월 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감사) 본 원의 회계는 연 1회 이상 운영위원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13조(운영규정 등) 본 원의 운영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운영규정과 관련법규,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

제14조(준용)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